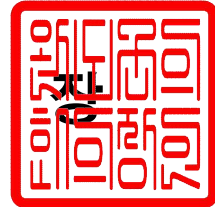


완도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완도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완 도 군 의 회 의



1. 조 례 명 : 완도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2. 발 의 자 : 조영식 의원

3. 제정이유

- 완도군민의 올바른 식생활 정착과 체계적인 영양관리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양 지원을 강화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영양·식생활교육 및 영양관리사업(안 제5조, 제6조)
-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식생활 조사 (안 제7조)
- 참여자 지원 등 및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안 제8조, 제9조)

5. 관련법령 : 국민영양관리법

6. 조례안예고기간 : 2025. 11. 6. ~ 2025. 11. 11.

7. 의견제출

-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의정지원1팀)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 (우) 59121
(전화: 061-550-5933, FAX: 061-550-590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8.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1팀(전화: 061-550-59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완도군 주민 영양관리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완도군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 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완도군 군민 영양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영양·식생활교육)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6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식생활 조사)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식생활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참여자 지원 등) 군수는 영양·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 사업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양·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생활용품 지원
2. 영양관리 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나 쿠폰, 물품 등
3. 영양관리 우수사례 발굴 시상

제9조(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영양관리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